

부실벌점위원회 상정안

□ 근거 : 「2018년 안전하고 품질높은 현장관리계획」 (본부장방침 '18.2.6)

※ 중점관리 20대 항목 등의 안전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시 '경고' 조치,
2회 적발시 '경고' 및 벌점위원회 상정

■ 안전분야

연번	현장명	소관 부서	위반사항		점검일	비고
1	서남물재생센터 3차(총인) 처리시설 설치공사(장기계속)	방재 시설부	①	고소작업구간 건너가는 구름다리에 안전난간이 미설치 되어 있고, 작업발판도 미고정	19.3.19	1차 경고
			②	가설통로가 미확보된 상태로 U-HEAD와 형비계를 밟고 고소작업구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		
			③	기존 설치되어 있던 작업발판을 재사용하여 여러 개소의 가설통로에 작업발판이 빠져 있는 상황		
			④	시트파일을 인발하는 이동식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일부를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반에 거치		
			①	간이 흙막이 가시설 설치 불량	19.9.20	2차 경고
			②	근로자 추락방지 대책 미 강구 및 안전난간 미설치		
			③	안전난간 미설치로 굴착구간 단부에서 근로자 추락 우려		
			④	개구부 덮개설치 불량		
			⑤	추락 위험구간 안전난간 미설치		

연 번 1 **지 적 사 항**

일 시 2019.3.19 **현 장** 서남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사업

지적사항
①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【방재시설부 소관사항】

- 3계열 시스템동바리 조립구간은 동바리상부를 건너가는 구름다리에 안전난간이 미설치 되어 있고 작업발판도 미고정 상태이며, 슬라브 상단 장선 설치구간은 외곽에 하중을 받을 수 없는 섬유로프만 설치하고 장선이 이미 시공된 상태로 작업중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시설이 없이 작업이 수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공정에서 추락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, 따라서 안전시설 완비 후 후속공정 진행요망



- 고소작업에 필요한 작업발판 설치시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, 승강시설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고소작업 발판 안전난간 미설치, 작업발판 미 고정등으로 추락위험

-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: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

구분	별점부여	주요 부실내용	기준
시공사, 현장소장 (1.11)	1~2점	○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-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-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	2 또는 3 1 또는 2
감리사, 감리단장 (2.4)	2점	○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-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·확인하지 않은 경우,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-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설치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	3 2

- 2019. 3. 22 : 조치 완료
: 시스템 동바리 슬라브 상부 난간대 설치, 작업통로상 발판 및 난간대 추가설치, 작업통로상 발판 탈락구간 추가 설치완료



연 번 1 **지 적 사 항**

지적사항
②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【방재시설부 소관사항】

- 3계열 시스템동바리 시공 최상단 장선설치 구간으로 상승,하강하는 안전한 가설통로가 미 확보된 상태로 U-HEAD와 횡비계를 밟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안전한 가설통로 확보 후 작업요망



-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항임.

-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: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

구분	별첨부여	주요 부실내용	기준
안전관리과 검 토 의 건	1~2점	○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-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-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	2 또는 3 1 또는 2
		○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-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·확인하지 않은 경우,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-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	3 2

조치결과

- 2019. 3. 22 : 조치 완료
: 시스템 동바리 슬라브 상부 난간대 설치, 작업통로상 발판 및 난간대 추가설치, 작업통로상 발판 탈락구간 추가 설치완료



연 번 **1** **지 적 사 항**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【방재시설부 소관사항】

- 가설비계 중 기존 설치되어 있던 작업발판을 재사용하여 여러 개소의 가설통로에 작업발판이 빠져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을 재정비 후 작업요망

지적사항
③


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항임.

-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: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,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

안전관리과
검 토 의 견

구분	별점부여	주요 부실내용	기준
시공사, 현장소장 (1.11)	1~2점	○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-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-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	2 또는 3 1 또는 2
감리사, 감리단장 (2.4)	2점	○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-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·확인하지 않은 경우,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-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	3 2

- 2019. 3. 22 : 조치 완료
: 시스템 동바리 슬라브 상부 난간대 설치, 작업통로상 발판 및 난간대 추가설치, 작업통로상 발판 탈락구간 추가 설치완료

조치 결과



연 번 1 **지 적 사 항**

○ **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사항** **【방재시설부 소관사항】**

- 시트파일을 인발하는 이동식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중 하중이 집중되고 붕괴위험이 매우 높은 사면 시점에 거치되어 있는 아웃트리거의 일부분이 지면에서 떠있는 상태로 지반붕괴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장비작업계획서 작성시 아웃트리거가 지지력이 충분한 지면에 거치될 수 있도록 작성 및 시행하고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요망

지적사항
④



- 크레인등 아웃트리거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편평하고 견고한 지면에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 지면에 대한 보완이 견고하지 않아 장비 전도의 위험이 있음.

-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: 아웃트리거 적정거치

안전관리과
검 토 의 건

구분	별첨부여	주요 부실내용	기준
시공사, 현장소장 (1.11)	1~2점	○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-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-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	2 또는 3 1 또는 2
감리사, 감리단장 (2.4)	2점	○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-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·확인하지 않은 경우,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-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	3 2

- 2019. 3. 25 : 조치 완료
: 해당 공중 관련 작업자 교육장에서 재발방지 교육 실시

조치 결과



연 번 2 **지 적 사 항**

일 시 2019.9.20 **현 장** 서남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사업

○ **흙막이 가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** **[방재시설부 소관사항]**

- 농축여액 방류관로의 조립식 간이 흙막이 가시설 설치 미흡

① 미설치한 간이 흙막이 즉시 설치

② 간이 흙막이 가시설이 불안전하게 설치된 배면부에 관보호용 골재를 적재하여 상재하중을 증가시켜 붕괴우려가 있으니 즉시 이동 조치

③ 주변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뒷채움 철저

지적사항
①



-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 상태가 불량하여 대형 붕괴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음

구분	별점부여	주요 부실내용	기준
시공사, 현장소장 (1.1)	1~2점	○ 토공사의 부실 나) 기초굴착 및 절토·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	1
시공사, 현장소장 (1.10)		○ 가시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나) 가시시설물의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	1 또는 2
감리사, 감리단장 (2.1)	1점	○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다)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	1

- 2019.9.21 : 조치 완료
: 조립식 가시설 설치 보완

조치결과



연 번 **2** **지 적 사 항**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**【방재시설부 소관사항】**

- 농축여액 방류관로 작업장은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이 미흡하여 근로자 추락위험.

① 관로상단 그라인더 작업자 추락재해 방지 조치 강구

② 이형관 적치장소 양중작업시 단부에서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니 안전난간 설치

지적사항
②


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, 안전대걸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항임.

-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: 2.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5.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,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

안전관리과
검 토 의 건

구분	별점부여	주요 부실내용	기준
시공사, 현장소장 (1.11)	1~2점	○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-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-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	2 또는 3 1 또는 2
감리사, 감리단장 (2.4)	2점	○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-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·확인하지 않은 경우,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-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설치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	3 2

- 2019.9.21. : 조치완료
: 안전대 체결 및 이동식 난간설치(되메우기 완료)

조치결과



연 번	2	지 적 사 항
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지적사항 ③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【방재시설부 소관사항】

- 유입펌프장 흙막이가시설 작업구간의 구조물 단부는 용접기 등의 기계기구 조작 시 근로자가 단부에서 추락할 우려가 있으니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단부와 이격하여 접근금지 요망


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항임.

-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: 5.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, 안전 시설 임의 철거 불가

구분	별점부여	주요 부실내용	기준
시공사, 현장소장 (1.11)	1~2점	○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-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-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	2 또는 3 1 또는 2
감리사, 감리단장 (2.4)	2점	○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-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·확인하지 않은 경우,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-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	3 2

조치결과

- 2019.9.21 : 조치완료
: 흙막이 가시설 구간 구획설정 및 접근금지조치



연 번 2 지 적 사 항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【방재시설부 소관사항】

- 유입펌프장 구조물의 개구부는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동이 없는 덮개를 설치하기 바람.

지적사항 ④


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항임.

-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: 3. 개구부 관리철저(난간 및 방망, 덮개, 폭목 설치)

구분	별점부여	주요 부실내용	기준
시공사, 현장소장 (1.11)	1~2점	○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-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-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	2 또는 1 또는
감리사, 감리단장 (2.4)	2점	○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-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·확인하지 않은 경우,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-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	3 2

- 2019.9.21. : 조치 완료
: 개구부 덮개 밀실 설치

조치 결과



연 번	2	지 적 사 항
-----	---	---------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【방재시설부 소관사항】

- 농축시설 상부슬래브의 거푸집 벽체 설치 작업장은 단부에서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니 안전난간을 즉시 설치하기 바람.

지적사항
⑤


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항임.

-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: 5.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,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

구분	별점부여	주요 부실내용	기준
시공사, 현장소장 (1.11)	1~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-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	2 또는 3 1 또는 2
감리사, 감리단장 (2.4)	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·확인하지 않은 경우,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-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	3 2

- 2019.9.21. : 조치완료
: 벽체거푸집 설치 및 추락 방지조치 완료

조치결과

